

WIPO의 전통지식 등 지적재산권 보호 논의 동향 및 대응 전략의 기본 원칙

안상우 · 김홍준 · 최환수^{*}
한국한의학연구원, ^{*} 교신저자

Abstract

Basic principles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greements and strategies about traditional knowledge in WIPO

Ahn Sangwoo, Kim Hongjun, Choi Hwansoo^{*}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 Corresponding Author

The international government committee is progressing their agreements about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TK), gene resource(GR), folklore(FL) in WIPO. It is in the course of selection with precedence of TK, GR, FL in WIPO, focused on discussions about listing of TK documents, standardization of DB construction, sharing and profit distribution of GR.

There are disagreements between developed countries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about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greements of TK, GR. The developed countries insist on using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s, but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ask new ones on character of TK, GR. It causes intangible assets to be valuable trade properties in future world trade.

We have to make national plans to face agreements about IP of TK, GR in WIPO with our own TK, GR. We must have a basic attitude about laying down these plans such as raising national economy, considering our TK, GR to be relics of mankind culture. In addition to these, it needs accurate analysis about agreements in WIPO, our TK, GR, scientific mechanical level and capital power.

Key words : WIPO, traditional knowledge, gene resource, intellectual property

1. 서론

20세기 중반에 출현한 만성질환과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난치성 질환에 대해 서양의학은 자체 내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세계 의학기술의 선진국들은 각국에 존재하고 있는 전통의학지식(TMK)과 유전자원(GR) 등에서 만성질환, 난치성 질환의 해결책을 찾고자 많은 연구비, 인력과 첨단 기술을 투자해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얻게 되었다¹⁾.

TMK, GR을 보유한 제3세계 중후진국가들은 그들의 전통지식(TK), GR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자산임을 인식해서 TK, GR, 민간전승물(FL)에 대한 지재권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고 결국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세계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다²⁾.

이러한 TK 등의 지재권적 보호 문제에 대한 세계 흐름에 우리나라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TK, GR 및 FL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보건의료체제내 전통의료를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WIPO 논의에 참여만 하기 보다는 우리의 TK, GR 및 FL을 보호해 국가 위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WIPO의 TK, GR에 관한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살펴보았다.

2. 본론

2.1. WIPO의 논의 동향

WIPO 정부간위원회에서 TK, GR 및 FL의 지재권적 보호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 4월 1차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6차 회의까지 개최되었다. 이러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WIPO는 1997년 11월부터 세계지식재산이슈반(Global Issue Division)을 설치하여 경제·기술·사회·문화 변화와 TK 등 지재권 제도의 관계와 관련한 모든 이슈에 대한 연구작업을 추진하였고, 또한 98~99년에는 남태평양, 동남아프리카 등 28개국 9개 실태조사반(FFM : fact-finding missions)을 파견하여 실태조사를 하였다.

전통·토착지식 보호를 위한 지재권 제도의 효과적 적용을 위해 1998년 7월에서 99년 11월까지 라운드 테이블을 2차례 개최하였고, UNESCO와 협력하여 FL 보호에 관한 지역협회를 99년에 4차례 개최하였으며, UNEP(UN 환경프로그램)와 협력하여 TK, 혁신, 창의성 등에 의한 이익공유를 위해 지재권 역할 관련 현장조사프로젝트(On-site Documentation Project)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선행 작업을 통해 WIPO 정부간 위원회가 2001년 4월에 개최되어 그 동안 개도국의 요구 및 실태조사를 통해 제기된 GR, TK 보호에 관한 이슈들을 목록화하여 작업의 우선순위 및 추진방법에 관해 논의하였다.

1) 신정은,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논의 동향 및 전망 :WIPO 정부간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 지식재산21 통권 제71호(2002. 3), 2002: 6-15.

인도 전통 민속의학 Ayurveda 에서는 예전부터 Neem 나무를 주요한 약재로 활용하여 왔다. 이러한 Neem 나무에서 추출한 여러 물질에 대하여 미국 등의 선진국 제약 회사들이 각종 국제특허를 취득하였다. 이로 인하여 인도 방갈로레에서 대규모 항의시위(93.10)가 있었다.

2) TK, GR, FL의 지재권적 보호에 관해서 WIPO 정부간 위원회 뿐만 아니라 WTO Trips 이사회, FAO(UN 식량 및 농업기구)의 식물유전자원위원회, CBD(생물다양성협약)의 체약 당사국회 및 Ad Hoc Open-ended Working Group, UNESCO 등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표 1. WIPO TK 지재권 관련 작업과제

B1	전통지식 용어 및 개념 정립
B2	전통지식의 지재권적 보호 가능성, 범위 및 활용에 관한 정보 수집·비교
B3	전통지식을 검색가능한 선행기술에 포함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준 개발
B4	전통지식 보유자의 지재권적 권리행사 지원방안 검토

표 2. WIPO GR 지재권 관련 작업과제

A1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계약협정」의 지재권 조항의 모델 및 가이드라인 개발
A2	기존의 지재권규범내에서 유전자원의 접근에 관한 일관성을 도모할 수 있는 개별국 특허법 형태 검토
A3	「식량농업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개정에 따른 식량 농업분야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실행방안
A4	유전자원 분야에서의 특허보호를 위한 표준규범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
A5	현 품종보호를 통합한 총괄적 유전자원 관리방안 검토

이러한 1차 개최에서 선정된 선행과제를 중심으로 이후 2003년 12월 말까지 5차례 개최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였기에 이를 중심으로 WIPO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1.1. TK 논의 동향

- 1) 전통지식 용어 및 개념 정립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지식의 개념 정의

에 따라 그 법적 보호의 범위 및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통지식의 정의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논의에서 TK를 “문화적 전통”과 적절하게 관련된 것으로서(Tradition), 단순히 형식 또는 표현이 아닌 “알고 있는 내용(지식)”(Knowledge)으로서 정의하고 있다³⁾.

- 이러한 TK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에는 ① 전통적인 상황에서 발생, 보존, 전승된 지식으로의 인식
- ② 지식의 세대, 보존, 전승을 담당하는 전통적인

3) WIPO/GRTKF/IC/3/9. p. 11.

‘TK’란 전통에 기반을 둔 문학, 예술 혹은 과학적인 작업; 발명품, 과학적 발견; 디자인; 기호, 이름과 상징; 비공개된 정보; 그리고 다른 모든 전통에 기반을 둔 혁신품과 발명품으로서 산업적, 과학적, 문학적 혹은 예술적인 분야에서 지적인 활동을 통하여 결실을 맺은 것들을 의미한다. ‘전통에 기반을 두었다’라는 것은 지적 체계, 발명품, 혁신품과 문화적인 표현들로서 세대에 걸쳐서 전해내려지며; 특정한 사람들 혹은 그 지역에 속한다고 일반적으로 간주되고; 변화하는 환경에 상응하여 지속적으로 진화한다는 의미이다. 전통지식의 항목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농업적 지식; 과학적 지식; 기술적인 지식; 생태학적인 지식; 의학적 지식과 그와 연관된 의학과 처방들; 생물학적 다양성과 연관있는 지식; 음악, 춤, 노래, 수예품, 디자인, 동화와 예술작품의 형태로 된 ‘민속전승의 표현’; 이름, 지리학적인 표식과 기호같은 언어의 요소들; 유동적인 문화적 재산 등

혹은 지역 원주민의 문화 혹은 사회와 지식의 연관

③ 지식과 전통적 사회·지역 원주민의 사회·전통적인 문화와 일치하는 일련의 사람들과의 관계성, 예를 들면 지식을 보존하기 위한 남용이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사용은 유해하거나 공격적이라는 것 ④ 지적재산의 관점에서, 사회·문화·환경·기술적인 상황의 넓은 영역에 걸쳐 이루어진 지적 활동에서 기원한 지식 ⑤ 지역사회 혹은 일련의 그룹들이 자신의 지식을 전통지식이라고 간주하는 경우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TK 개념 정의의 어려움은 현재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한 sui generis 체제를 가지고 있는 브라질·파나마·페루·포르투갈의 관련법 상 TK에 대한 구체적 정의 규정을 참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TK의 정의는 이를 보호하는 지재권법 체계가 현행 법으로 할 것인지, 현행 법체제의 sui generis 요소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sui generis 체제로 보호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그 보호 목적이 TK 보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두거나, 혹은 무분별한 상업적 이용을 방지하거나, TK 관련 문화적 표현 사용에 대한 라이선싱이나 제3자와 상품에 사용되는 라이선싱에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GR 관련 용어는 이 문제를 다루는 국제적인 fora에 의해 정의되었다. 이들 용어의 보편적인 이용은 아래와 같다. (1) ‘유전적 자원’은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유전적 물질 (2) ‘유전적 물질’은 유전의 기능적인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의 또는 다른 근원의 어떤 물질을 의미한다. ‘유전의 기능적인 단위’는 DNA, 어떤 경우에는 RNA를 포함하는 조직 표본으로부터의 추출물, 조

식의 일부, 전체적인 조직을 포함한다. ‘유전 단위’의 ‘기능성’은 현대 생명 공학의 전개에 매우 의존적으로 이해되는 문제이다. (3) ‘생물학적 자원’은 인류를 위한 실제적, 혹은 잠재적인 가치나 이용과 더불어 유전적 자원, 작용, 파생적인 부분 인구 또는 어떤 다른 생물학적 요인을 말한다. 유전적 자원은 생물학적 자원의 한 분야를 형성한다. (4) ‘식물 유전적 자원’은 식물 유전적 자원의 수집과 연구를 위한 국제적인 규율의 상황에서, ‘실제적, 혹은 잠재적인 가치의 유전적 물질’을 의미한다. ‘유전적 자원’이나 ‘식물 germplasm’이라는 말은 문맥상 ‘식물의 재생산적인, 혹은 생장의 증식 물질’을 나타낸다. (5)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적 자원(PGRFA)’의 분야에서 ‘식물 유전적 자원’은 다음에 나타난 식물 분야에서 재생산적이고 생장적인 증식 물질을 나타낸다; 여기에는 ① 현재의 이용과 최근에 개발된 다양성에서 경작된 농산물 ② 퇴화된 경작물 ③ 우선적인 경작물 ④ 야생의, 잡초 종, 경작된 다양성의 가까운 관계 ⑤ 특정한 유전적 자원(최고의 최근 경작자 돌연변이를 포함) 등을 포함한다).

위와 같은 TK, GR, 개념들은 아직 확고하게 정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각국의 이해관계 혹은 각국의 사회적 관습, 역사와 문화 등에 따라 개념 정립상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TK란 전통에 기반을 둔 유전자원, 전통기술, 더 나아가 전통의약, 민속 저작물 등 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에 포함되는 TM에 대해 “공개되었거나 비공개되었거나를 불문하고, 육체적·정신적 또는 사회적 불균형(불안정)을 진단하고 예방하고 제거(치료)하는데 사용되는 그리고 구전이든, 문서에 의한 것이든지를 불문하고 대대로 내려오는 전

이 있다. 이런 TK의 정의에서 제외된 품목은 산업, 과학, 문학 혹은 예술분야에서 지적 활동에 의한 결과물이 아닌 사람들, 일반적인 언어,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유산’의 유사한 요소들이 있다.

4) WIPO/GTRKF/IC/3/9. ‘Traditional knowledge operational terms and definitions’. p. 14

5) WIPO/GTRKF/IC/5/8.

6) WIPO/GTRKF/IC/1/3. Annex 3. p. 1-2.

적으로 실제적 경험과 관찰에 기초한 모든 지식과 처치·실무(the sum total of knowledge and practices)를 말한다”고 WHO에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GR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미생물, 동물, 식물) 및 DNA, genome 등의 자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서양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시스템 속에서 배태된 현행 지적권법을 TK, GR, FL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TK, GR 개념을 확정하지 못하였기에 현행 지적권법의 보호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우며 해당 지식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 누구의 권리인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지적권적 보호를 위한 TK, GR, FL 개념을 확정해야 하는데 있어서 인류가 그것들을 보존하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개념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2) 전통지식의 지적권적 보호 가능성, 범위 및 활용에 관한 정보 수집·비교

제2차 정부간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전통지식을 현재의 지적권법 체제내에서 보호한 국가적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5차 회의에서 발표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회원국들이 현행 지적권 법제하·저작권관련법, 특허법, 식물다양성보호법, 상표법, 지리적표시, 의장법, 영업비밀보호법 등에서 전통지식의 보호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전통지식의 Defensive Protection을 위한 현행 지적권 체제의 적용에 관해 콜롬비아·뉴질랜드·미국·EU 및 일본 등은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 정보를 현행 지적권 체제에 의하여 적절히 공개(DB 등)하는 것에 의하여 전통지식 보유자 이외의 자가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포르투갈·캐나다·뉴질랜드 및 콜롬비아 등은 전통지식의 표현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현행 상

표제도의 이용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즉 TK의 보호에 관한 입장은 대부분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sui generis 체제의 도입보다는 기존의 지적권 체제에서 TK의 효과적인 보호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이러한 경우 TK는 오래된 것(이미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현행 지적권법 체제하에서 신규성을 인정받기 곤란(28개국)하고, 현행 지적권법 체제에서는 발명자 또는 저작권자의 확인을 요구하고 있지만, TK의 경우에는 확인 곤란(21개국)하며 현행 지적권법 체제에서는 권리 보호기간이 제한(15개국)되어 있다는 제한점도 있음을 논의하고 있다⁷⁾.

3) 전통지식을 검색가능한 선행기술에 포함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준 개발

1차 정부간위원회에서 전통지식을 검색 가능한 선행기술에 포함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준 개발과 제인 B3를 우선 검토기로 합의하였다. 그 동안의 논의 경과를 보면 제3차 정부간위원회에서 활용 가능한 전통지식 DB 현황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전통지식 DB구축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고, 아시아그룹의 2002년 11월 인도 코친에서 개최된 GRTKF 아시아 지역세미나와 동시에 열린 전통지식 DB 전문가 워크숍에서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제안문서를 제출하였다. 이 때 아시아그룹 기술적 제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지식, 특히 전통의약지식의 방어적 및 적극적 보호를 위한 다목적 DB의 구축과 사용을 위한 표준 권고안을 제안하였다. ‘내용 및 출처확인 표준’, ‘기술적 표준’ 및 ‘보안관련 표준’으로 구성하자는 것과 내용 및 출처확인을 위한 표준화를 위해 DB 내의 필드 정의 및 구분기호 표준, 메타 데이터 표준 및 사용 용어 표준으로서 전통지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표준을

7) WIPO/GRTKF/IC/5/7.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다. 보안 및 전송 표준에 대해서는 정보전송을 위한 보안 표준으로서 Digital Watermark, EMR 등이 제안되었으나, 향후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한 영역임을 밝혔다. 또한 WIPO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전통지식 DB의 목적과 기능 및 데이터 규격에 대한 정보수집, 전통지식 DB의 기술적 규격에 대한 검토작업을 새로운 Task로 설정, CBD와 FAO 및 UNESCO 등과 같은 다른 국제기구와의 공동협조, 특히 실체심사에 전통지식 DB가 사용될 수 있는 실체적 수단 강구

등을 제시하였다. 제4차 정부간위원회에서 아시아그룹에서 제안한 전통지식 DB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WIPO산하 SCIT에 이관하기로 합의하였다⁸⁾.

2차 정부간위원회에서 위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설정된 6개 과제는 표 3과 같고, 그 동안의 추진결과는 WIPO에서 관장하는 국제적 특허제도의 수정, TK 보유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실체적 결과물 및 도구 개발이라는 두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표 3. 전통지식의 선행기술 활용방안

①	전통지식관련 간행을 PCT 최소문헌으로 포함시키는 과제
②	전통지식 간행물들을 JOPAL (Journal of Patent Associated Literature) 프로젝트에 포함시키는 과제
③	내국출원에 있어 전통지식 문헌을 활용토록 하는 과제
④	국제적인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 및 전자도서관 구축
⑤	전통지식관련 발명을 고려한 기존 지재권관련 서류양식 재검토
⑥	전통지식의 서류화작업 지원 과제

전통지식관련 간행물을 PCT 최소문헌에 포함시키는 과제에 대해서 TK관련 간행물 및 DB 목록을 WIPO가 작성하고, PCT/CTC 회의 및 PCT 초회에서 상기 목록을 검토하며, PCT/MIA 회의에서 TK관련 간행물을 PCT 최소문헌에 추가 승인토록 해서 PCT/CTC 회의에서 일부 간행물은 PCT 최소문헌으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PCT/MIA 회의에서 TK관련 간행물 요건에 대해 선행기술일자 등 선행기술로서 요건을 갖춘 기술적 내용의 충분한

표현, 전자적 형태의 입수가능성을 포함하는 자료에 대한 실질적 접근방법, 영문 내용 또는 적어도 영문 초록의 입수가능성, 간행물의 기술분야 행위, 간행물의 지리적 상황, 텍스트 검색 가능성 및 이용비용을 포함하는 사용조건 등이 있어야 함을 결정하였다.

TK 간행물 목록 활용방안에 대해 2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8) WIPO/GRTKF/IC/5/6.

표 4. 전통지식의 간행물목록 활용방안

작업 과제	과제 방안
1	TK 간행물목록을 PCT기술협력위원회(PCT-CTC)에 제출하여 PCT 국제조사 최소문헌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토록 하는 방안
2	TK 간행물목록을 특허심사관 등이 활용 가능하도록 WIPO 웹사이트에 on-line으로 접근 가능한 형태로 유지하는 방안
3	각국 특허청이 TK 관련 문헌의 분류 및 평가에 협력하여 결과물을 자국내 검색범위(in-house search collections)에 포함시키는 방안
4	TK 간행물목록을 IPC Union의 TK분류관련 Task Force에 제출하여 TK분류체계 검토작업에 참고토록 하는 방안
5	TK의 문헌화과정에 발생하는 지재권 문제에 관하여 TK보유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Intellectual Property Documentation Toolkit”을 마련하는 방안

국제적인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 및 전자도서관 구축에 대해 WIPO의 공개된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 온라인 DB를 포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인도정부의 요청에 따라 인도 전통의약의 시험DB를 운영토록 하였다. PCT/MIA에서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 관련 국제조사를 위한 온라인 DB 설립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하고, CBD Clearing-Mechanism 과 WIPO 포탈이 협조하기로 하였다.

전통지식관련 발명을 위한 IPANS에서 표준의 재검토에 대해 아시안그룹이 제안한 전통지식 DB구축을 위한 표준에서 문제제기를하였고 WIPO ST. 9, ST. 81 등과 같은 WIPO문서표준에 대한 분석, 전통지식 관련 의약 특허발명을 위한 새로운 IPC 분류 신설을 위한 개정안- 200개의 서브그룹을 가진 A61k 36/00 신설을 제출하였다⁹⁾.

4) TK 보유자의 지재권적 권리행사 지원방안 검토

전통지식의 문헌화 작업에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TK와 GR의 문헌화 작업에 있어 지재권 관리를 위한 WIPO Toolkit 초안을 작성, 이 초안은 향후 UNEP, UNU, CBD 등의 국제기구 전문가들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¹⁰⁾.

2.1.2. GR 논의 동향¹¹⁾

GR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계약 DB에 관해서 제4차 회의에서 GR의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된 계약관행 및 조항(이하 ‘계약 DB’)에 관한 pilot DB의 시연을 하였고 계속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는데, 회원국 대상 GR 계약 및 라이선스 사례 설문 조사의 연장에 합의하였다. 계약 DB를 발전시켜 기존의 계약 DB의 최신판을 WIPO 웹사이트에 게재토록 하고 사용자가 직접 계약조항이나 정보에 링크될 수 있도록 문서 검색 및 하이퍼링크 기능을

9) WIPO/GRTKF/IC/5/6.

10) WIPO/GRTKF/IC/5/6.

11) WIPO/GRTKF/IC/10

추가하였다. 일부국가의 유전자원접근 관련법을 소개하였으며, 계약 DB의 지재권과 관련해 4가지 범주의 계약(계약끼리의 조합 가능)-의향서(Letter of Inten : MOU와 유사), 비밀 및 비공개 협정(Confidentiality or Non - Disclosure Agreements), 물질이전 협정(Licensing Agreements)-을 제시하였다. 회원국들이 계약 DB를 계속 유지하고 갱신할 것을 승인할 것 인지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 협정의 지재권 규정을 위한 운영원칙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요구를 검토하자고 하였다¹²⁾.

유전자원 관련 특허공개 요건에 대해 6차 CBD의 당사국총회(COP)에서 WIPO에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특허 명세서 기재 요건에 대한 분석 및 검토를 요청하였고 3차 회의에서 CBD 당사국총회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하고 다음의 일정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4차 회의에서 사무국에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련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분석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CBD 및 다른 회의에서의 정책토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술적인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WIPO나 회원국의 정책을 표명하는 공식자료가 아니며, 특허와 유전자원과의 관계와 관련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단지 예시로서 명확화하기 위한 자료였다. 공개요건의 필요성(Trigger for the disclosure requirement)에 대해서는 발명의 완성에 대한 GR의 기여도를 명확화하기 위해 연구과정에서 사용된 유전자원이 발명을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경우와 연구과정에서 사용되는 유전자원이 발명의 완성에 우연한 도움이 된 경우로 구분해야 한다고 하였다. 공개요건의 법적 원리(legal principle forming the basis of the requirement), 출원인에게 요구되는 공개의무의 성격(nature of the obligation placed on the applicant), 공개요건 위반시 처리 특허법·조약에 의한 공개 시나리오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GR의 접근 관련 향후작업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주로 유전자원 접근과 관련하여 조약, 각국의 국내법 및 특별법 등을 대상으로 이론적 분석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향후 가이드라인이나 권고문 확정의 일환 및 국가간 경험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국에서 유전자원 접근과 관련하여 경험한 best/worst practices를 자발적으로 위원회에서 발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WIPO의 TK, GR의 지재권적 보호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몇가지 특징적인 흐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TK와 GR 분야중 짧은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과제들, TK의 DB화 및 GR의 공유와 이익분배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TK, GR의 특징과 우수한 장점들에 대해 학문적, 과학적인 정립 없이 단순히 활용적인 측면만을 중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세계 각국의 TK, GR의 보유여부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자본 기술력 여부에 따라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TK, GR의 지재권적 보호에 대해 각 국의 이해 득실에 따라 입장 차이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아직까지 WIPO의 논의에서 TK, GR의 지재권적 보호에 관해 정립되어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우리 TK, GR의 보유여부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과 자본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2. WIPO 논의의 대응 방안 구축의 기본 원칙

WIPO의 TK·GR에 관한 지재권 논의는 이전 Trips 협약과 같은 지재권 관련 협정에서처럼 남북

12) WIPO/GRTKF/IC/5/9.

문제 즉 과학기술우위와 자본을 앞세운 선진국과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이 풍부한 개도국간의 갈등양상을 유사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개도국들은 주로 GR·TK·FL의 보호 당위성을 강조하고 WIPO가 개도국에 대해 능력배양 지원을 포함한 기술적,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EU·일본 등 선진국들은 전통지식에 관한 기술이 타인에게 특허되지 않도록 전통지식을 선행기술로서 활용하기 위한 D/B 구축에 동의하고 특허법조약·IPC(국제특허분류) 등 기존의 지적권 제도와의 조화로운 틀 속에서 새로운 이슈에 대한 보호가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개도국 그룹중 특히 아프리카·중남미 그룹은 GR·TK·FL의 보호를 위해 특별한 제도(sui generis system)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다만 개도국이 주장하는 특별제도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향후 과제로 남겨 놓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예상된다¹³⁾.

이러한 세계적인 논의의 흐름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입장으로 대처해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현재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선진국도 아니고 풍부한 GR의 보유국도 아니기 때문에 중간자적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좀더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에도 TMK를 포함하는 TK, GR이 분명히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고 우리의 생명공학 발전의 잠재성까지 있다고 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판단해 대처해야만이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러한 WIPO 논의에 대처하는데 기본 원칙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를 고찰하였다.

2.2.1. 국가의 경제적 효과 제고

지재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재권법은 정신적 재화인 지적재산 내지는 무형의 재화인 無體재산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법체계를 일컫는다. 이는 인간의 지적창조물에 대하여 법적인 보호를 부여함으로써, 창작의욕을 고취하는 한편(私益의 측면) 그 보호가 지나쳐 지적 창조물의 과실을 사회가 충분히 향유될 수 없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는데(公益의 측면) 목적이 있다고 한다¹⁴⁾. 즉 지재권은 산업화하는데 있어서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으로 만일 산업화, 상용화하지 않는다면 굳이 지재권적 보호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외 세계 무역 경제에 있어서 세계 지식재산권 보호의 최소기준을 정함으로써 지재권을 다자무역 시스템인 WTO내에 편입시킨 Trips 협정이 발효된 이후 특히 미국·EU·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지재권 통상협상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지재권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지식재산이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부상하며 지재권의 경제적 가치가 더욱 커지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지재권 문제가 주요한 통상이슈의 하나로 부각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지재권을 국부창출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지재권의 창출 및 활용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차원의 비전제시와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중인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왜 지금까지 보호되지 않던 TK, GR 등의 자원을 지재권으로 보호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특히 서양의학계 자체의 한계로 인해 전통적인 TK, GR을 활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진산업 국가의 종자와 제3세계로부터 얻어진 식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경우에

13) 신정은, 앞의 글, 6-15.

14) 吳承鍾·李海完 共著. 著作權法. 重版, 서울: 博英社, 2002: 1-2.

이미 일어나고 있다. 고등식물로부터 분리되어 현대 의학에 의해 널리 쓰이고 있는 120종의 화합물 가운데 75%는 전통적인 지식체계내에서 이미 그 효용이 알려진 것들이다. 12종 미만의 것들만 간단한 화학적 조작에 의해 합성된 것이고, 나머지는 식물로부터 직접 추출하여 정제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¹⁵⁾. 이로 인해 세계 의학계에 TK, GR를 활용한 제품 예를 들어 건강식품, 기능성 식품 시장이 2000년에는 650억달러이고, 2006년에는 1,5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므로 TK, GR의 지재권적 보호에 관한 WIPO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인 TK, GR 이라는 무형자산을 보호하고 활용하여 세계 무역 경제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TK, GR의 연구 개발과 산업화 기반을 확충하고, 정부의 TK, GR에 대한 R&D 투자비를 늘려야 하며, 천연물 정보화 기술을 통해 TK, GR을 이용한 산업화, 상용화 가이드 시스템으로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우리의 경쟁력의 핵심인 국내에 축적된 고유 지식에 대해 산업화를 촉진시켜 국가에 경제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 있는 투자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TK, GR에 대한 연구 개발을 촉진하는 것 이외에 법적, 제도적으로도 지원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의약품 허가제도중 ‘중의약신약개발허가양식’이라는 행정 제도¹⁶⁾와 유사하게 국내 TMK

의 제품의 권리 보호를 함으로써 산업화를 촉진하는 행정 제도를 제정할 수도 있고 또는 국내 과학 기술혁신법중에 TK, GR 기술을 보호하고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단지 우리의 TMK가 중국의 전통의학과 유사해서 우리에게 경제적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선입견으로 WIPO 논의에 대처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오히려 우리와 유사한 전통의학에 대해 WIPO 논의 상에서 중국의 원천기술, 원천지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중국의 전통의학과는 다른 우리만의 차별적인 특징이 있음을 주장하고 또한 발굴하고,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중국과 협의를 통하여 양 국가의 공통적인 자산으로 정립시키는 것도 좋을 듯하다.

종합하면 우리들은 국내 생명공학기술과 전통문화 모두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국가 경제와 산업계에 막대한 효과를 불러 일으키겠다는 원칙으로 WIPO의 TK, GR의 지재권적 보호 논의에 대처해야만이 얻을 것이 없다는 식의 소극적인 자세를 없애고 우리에게 유리하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2.2. TK, GR은 인류 문화 유산이라는 인식

TK는 인류가 지구에서 나타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축적하여왔던 경험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고, GR 또한 인류에게 식량 및 치료약물 등으로 사용되어진 유용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15) 반다나 시바 지음, 한재각 외 옮김. 자연과 지식의 약탈자들. 1판1쇄, 서울: 도서출판 당대, 2000: 142.

16) 제1류 : ① 중약재의 인공제조품, ② 새로 발견된 중약재 및 그의 제제, ③ 중약재중에서 추출한 유효성분 및 그 제제, ④ 복합제제 중에서 추출한 유효성분
제2류 : ① 중약주사제, ② 중약재의 새로운 약용 부위 및 그의 제제, ③ 중약재 및 초약중에서 추출한 유효부위 및 그의 제제, ④ 중약재 및 인공방법으로 동물체내에서 추출물 및 그의 제제, ⑤ 복합제제 중에서 추출한 유효부위
제3류 : ① 새로운 중약의 복방 제제, ② 중약의 약효를 위주로 하는 중약과 화학약품의 복합제제, ③ 외국에서 종자를 가져왔거나 혹은 외국에서 양식한 수입제제 및 그 외 제제
제4류 : ① 체형을 개변시키거나 혹은 약물투여경로를 개변시킨 제제, ② 국내의 다른 곳에서 들여온 종자거나 혹은 야생을 집에서 기른 동식물약제
제5류 : 새로운 병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품

TK와 GR은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하면서 축적한 공동의 유용한 문화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TK·GR 등의 지재권 경제적 가치가 급부상하게 된 것은 어떤 원인에서 인가? 과학기술발전 방향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과학기술이 18세기 이후로 발전하면서 과학기술에 근거한 생산품을 원료로 다시 새로운 것을 발견·발명·발전시키는 순환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과학기술이 발전되었지만 그러나 21세기에 가까이 다가오면서 급진적인 세계 과학기술의 변화와 확대로 인해 과학기술발전의 재료성 지식·기술·자원을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원천지식·기술과 자원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의 원동력을 삼을 수 밖에 없는 환경으로 변화됨으로써 기존의 과학기술발전 순환시스템에 큰 변화가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은 시장의 요구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의학분야를 예로 들면 미국에서 전통약 물요법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보면 (Celestial/Harris survey) 79%가 안전하다고 답하였고, 세계 건강식품 시장규모가 2000년에 650억 달러에 이르렀고, 국내 시장도 5조원까지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¹⁷⁾. 즉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약물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제품을 통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시장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TK, GR이 유용성을 가진 인류 전체의 문화적 유산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지재권적 보호 문제에 대해 단순히 경제적 가치로서 다루어서는 안되고 유용한 문화적 유산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바탕에서 각국의 문화적 요소를 인정함으로

써 TK, GR의 특수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더욱더 인류에게 유용한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서양과학기술 기반에서 정립된 지재권 법률 또한 TK, GR의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¹⁸⁾. 특히 우리도 우리의 TMK를 포함하는 TK, GR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제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외 WIPO 논의 동향을 정확하게 분석해야만이 세계와 병행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의 TMK, GR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다. WIPO 논의가 TK, GR의 문헌화를 위한 toolkit 초안 준비단계에 있는데¹⁹⁾, 지금 TK, GR 문헌화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문제는 앞으로 전개될 WIPO 논의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WIPO의 TK, GR에 대한 지재권적 보호 논의에 대한 국가 경제적 효과 제고, TK, GR의 인류 문화 유산 인식이라는 자세 이외에도 우리의 입장과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WIPO의 논의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고 분석해야 할 것이다.

3. 고찰 및 결론

21세기는 전세계가 지식기반 사회로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나 인간의 지적능력이 새로운 재산가치로 부상하고 기업활동 및 기업합병에 있어서 이들 무형자산(지재권)이 중요한 자산으로 되고 있다²⁰⁾. 그럼으로써,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타결에 따라 GATT에서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로 넘어가면서 WTO/Trips 협정을 기초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재권을 통상협상의 주요 수단으로

17) 안두현. 한의약 연구사업의 투자전략 연구.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 보건복지부, 2002: 17.

18) WIPO 논의상에서 제기되는 특별한 권리 보호 시스템(sui generis system)은 TK, GR의 특수성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TK, GR을 보유한 국가의 이해득실에 의해 주장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된다.

19) WIPO/GRTKF/IC/5/5.

20) 김해중.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사례연구. 발명저널. 통권2호(2002. 4). 2002: 17-30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지재권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지식정보화 시대의 지식재산이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부상하고 경제적 가치가 더욱 커지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지재권 문제가 주요한 통상이슈의 하나로 부각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지재권을 국부창출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지재권의 창출 및 활용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차원의 비전제시와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중이다²¹⁾.

특히 과학기술 우위에 있는 선진국들이 TMK를 활용한 신약개발로 부가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고등식물로부터 분리되어 현대의학에 의해 널리 쓰이고 있는 120종의 화합물 가운데 75%는 전통적인 지식체계 내에서 이미 그 효용이 알려진 것들이고 12종 미만의 것들만 간단한 화학적 조작에 의해 합성된 것이라고 한다는 것과 같다²²⁾.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자 TM을 포함한 TK를 다량으로 보유한 국가들은 과학기술 수준의 저하로 인한 박탈감을 느끼고 자신들의 TK를 보호해야 한다는 급박함으로 TK 등에 대한 지재권 보호를 주장하고 나서게 되어 결국 WIPO를 중심으로 TK 등의 지재권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본고는 TK, GR의 지재권적 보호에 관한 WIPO 논의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를 통해 국가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원칙과 TK, GR은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는 인식이 기본 원칙임을 제시하였다. 전자는 지재권의 개념에 산업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래 세계 무역의 향방이 지재권과 같은 무형 자산의 소유 여부에 있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이는 우리의

TK, GR이 국가에 경제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무형의 자산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후자는 대체적으로 자본과 첨단 과학기술을 가진 선진국들과 TK, GR을 보유하고 있는 중후진국들간의 합리적 활용으로 전 인류가 그 효과를 볼 수 있어야 하고, TK, GR은 인류가 역사적으로 겪은 수많은 경험을 축적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성으로 인한 창조성을 훼손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근거한 것이다. 이는 우리의 TK, GR이 우리 역사를 통해 축적되고 형성된 문화유산이고 또 인류에게 유용한 유산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두가지보다 더욱더 기본이 되는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WIPO의 논의 동향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인데, 이래야만이 우리의 입장이 세계적인 논의에서 반영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5천년의 역사를 통해 축적된 많은 TK, GR을 보호 육성하고 또 현재 발전된 과학기술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모른다. 특히 근대 보건의료체계내에 전통의학을 인정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TMK에 대한 지재권을 인정할 경우 높은 국가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기본 원칙을 근거로 TK, GR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비공개되고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들의 발굴, DB 구축을 통한 관리, 내용에 대한 경제적, 과학적, 문화적인 평가방법 개발, 이를 이용한 산업화, 상용화 시스템 개발을 통한 육성 등 여러 측면으로 접근해 결국 우리의 전통 문화인 TK, GR이 인류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1) 김수동. 최근 세계의 지재권 뉴이슈와 바람직한 한국의 입장. 産業財産權 통권 제11호(2002. 5), 2002: 287-342.

22) 반다나 시바 지음, 위의 책, 142.

참고 문헌

1. 신정은.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논의 동향 및 전망 :WIPO 정부간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 지식재산21 통권 제71호(2002. 3), 2002.
2. WIPO/GRTKF/IC/3/9. 'Traditional knowledge operational terms and definitions'.
3. WIPO/GRTKF/IC/1/3. Annex 3. p. 1-2.
4. WIPO/GRTKF/IC/5/8. Composite Study on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5. WIPO/GRTKF/IC/5/7. Consolidated Survey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6. WIPO/GRTKF/IC/5/6. Practical Mechanisms for The Defensiv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Genetic Resources within The Patent System.
7. WIPO/GRTKF/IC/5/10. Draft Technical Study on Disclosure Requirements Related to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8. WIPO/GRTKF/IC/5/9. Contractual Practices and Clauses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9. 吳承鍾·李海完 共著. 著作權法. 重版, 서울: 博英社, 2002.
10. 만다나 시바 지음, 한재각 외 옮김. 자연과 지식의 약탈자들. 1판1쇄, 서울: 도서출판 당대, 2000.
11. 안두현. 한의약 연구사업의 투자전략 연구. 한방치료 기술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 보건복지부, 2002.
12. WIPO/GRTKF/IC/5/5. Report on The Toolkit for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When Documenting Traditional Knowledge and Genetic Resources.
13. 김해중.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사례연구. 발명저널. 통권2호(2002. 4). 2002.
14. 김수동. 최근 세계의 지재산 이슈와 바람직한 한국의 입장. 産業財産權 통권 제11호(2002. 5), 2002.